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공존을 위한 지침

일본의 사례

안희도 /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에 여가 시간의 증가, 국민의 자연 지향·건강 지향 등을 배경으로 하여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민의 니즈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낚시, 조간대 체험이라는 유어활동에 덧붙혀 요트, 모터보트,ダイ빙 등의 다종다양한 해양성 레크레이션(이하「해양레크리에이션」)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의 레크리에이션 이용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 어장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연안해역에 있어 어업과 해양레크레이션과의 사이에서 해면 이용을 둘러싼 경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양자간의 경합은 더욱 심화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어업과 해양레크레

이션과의 해변 이용에 관한 조정 및 해면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트러블(이하「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에 일본 수산청에서는 각 계분야 지식인으로 구성된 「해양이용 중앙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都道府縣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관계자, 해양레크리에이션관계자, 행정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사이에서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조정지침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지침은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사이에서 해면을 조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정 시책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의 실태가 연안의 지리적 조건과 어업의 사정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그 지역의 실태에 맞춰서 조정을 행하여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트러블의 미연방지를 위해 어업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와의 공통 인식 형성

어업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와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로의 실태를 이해하고, 해면의 조화적 이용에 대하여 공통 인식을 가져야 함이 기본조건이므로 지방공공단체 및 해면 이용조정을 업무로 하는 공익법

인(이하「지방공공단체 등」)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 대하여 정치망, 양식업 등의 설치 현황과 같은 어업실태와 어업활동을 배려한 해면 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한편, 어업관계자에 대하여서도 해양레크리에이션에 의한 이용 니즈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적극이해 인식시켜야 한다.

트러블의 미연방지를 위한 상호이해의 촉진과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매너의 보급

(1)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에 의해 해면 이용이 폭주하는 해역에서는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방공공단체 등은 어업협동조합(이하「어협」) 및 해양레크리에이션단체(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들의 정보 입수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낚시, 마리나, 다이버숍 등을 포함.)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연락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업관계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와의 협의의 장(場)인 해면이용지구협의회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는 아직 미조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체 구성을 위한 조직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를 선두로 해면 이용자 가 해면의 조화적 이용에 관한 매너 및 해면을 조화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역적인 관습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 대하여 이러한 매너를 계몽하고 (1)의 회합모임을 이용하여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습을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면의 조화적 이용에 관한 매너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어업관계법령, 해사관계법령 등 의 기존 법령에 준한다.

(3) 해양레크리에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업자가 해양레크리에이션의 공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는 어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공존의 필요성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도입에 의한 어촌 진흥의 가능성에 대하여 계몽하는 것이 중

요하다.

(4)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 의한 밀어(密漁)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식이 없는 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 등은 어업관계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체가 함께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 대하여 밀어가 위법 행위이며 해면을 조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중대한 저해 요인이라는 인식을 주지시키며 경찰 등 사법기관과 연락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해난방지, 환경보전, 자원보호 등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주로 어업자가 해난사고의 구조활동, 해변·해중청소, 종묘방류 등을 수행하여 왔지만 보다 원활한 해면이용관계를 구축하여 가기 위해서는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가 이러한 어업자의 활동을 인식하고 또 양자가 협조하여 이러한 활동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어항의 이용을 둘러싼 트러블은 어업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간의 상호불신 원인의 하나가 되므로 어항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는 어업근거지로서의 어항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게 어항 이용 규칙을 준수 토록 하고 이를 주지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의 협의 추진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 등은 해면이용지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협의는 양자의 상호 이해에 토대를 두고 서로 대화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향, 해양레크리에이션 이 수산자원·지방경세에 미치는 영향, 지역진흥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여 양자를 조정·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규칙 제정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업자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의 실태를 감안한 다음과 같은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함이 중요하다.

① 정치망 또는 양식장의 해역에서의 어업활동에 있어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게 배려해야 할 구역

② 해녀·잠수부에 의한 잠수장이 있는 해역에서의 어

업활동에 있어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게 배려해야 할 기간·시간

③ 어항의 항구 부근에서의 어선의 항행에 있어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게 배려해야 할 구역 또는 항구로부터의 거리

④ 정치망, 양식장, 장수활동을 행하는 선박 등에 설치해야 할 표지의 형상·표시형태

⑤ 해안 근처에서 항행에 수반되는 소음을 제한해야 할 구역·거리

⑥ 자원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 어종마다 어획량·체장의 제한 또는 전면 휴어일(休漁日)의 설정

⑦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시간적·공간적 폭주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할 구역 및 이용시간을 구분, 등

조정 지침의 개요

①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부와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가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해 공통 인식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은 양자가 서로 해면의 이용 상황을 인식하도록 주지한다.

②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해면의 조화적 이용 매너를 보급하도록 한다.

(매너의 일례)

- 정치망·어선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어항의 항구 부근에서 유주(遊走)·정박하지 않는다.

③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면이용지구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의 실태를 감안한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규칙의 일례)

- 해녀·잠수부에 의한 잠수장이 있는 해역에서의 해양레크리에이션 행위자에게 배려해야 할 기간·시간
-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과의 시간적·공간적 폭주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할 구역 및 이용시간 구분 등

④ 해면의 조화적 이용을 위한 규칙·매너의 정착에는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도시 주민과의 교류 등을 활발히 한다. 